

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「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4. 11. 12.

임실군의회회장

#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(유통산업발전법)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영업규제 예외 농산물 매출 비율을 55% 이상으로 상향 조정  
(안 제15조의 2)

### 3. 참고자료

가. 관련근거 :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14. 8. 29 ~ 2014. 9. 18) 결과 : 특기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(비행정규제)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불임

5) 비용추계서 : 불임(미첨부사유서)

6) 관련법령 발췌문 : 불임

##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중 "51퍼센트"를 "55퍼센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..... .....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<b>51퍼센트</b>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.	제15조의2(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..... .....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<b>55퍼센트</b>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.

## 임실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없음

#### 4. 작성자

지역경제과장 강 두 천

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4A 전북임실045		
정책명	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지역경제과	
	담당자명	이자운	전화번호 063-640-2405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4년 09월 22일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지역경제과)	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성별 구분, 성별 고정관념,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 ○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4년 10월 01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주민생활복지과장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정나겸/640-2124)</p> <p>지역경제과장 귀하</p>			

## □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

### 제12조2 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

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업시간 제한
2. 의무휴업일 지정

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